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3년 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3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이장자녀 장학금의 “생활비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여 타 장학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학 자격·지급 횟수 및 지급 정지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등 변경

- 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 나)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시(안 제1조)

2) 장학생의 자격기준(안 제2조)

- 가) 지급 고등학교·대학의 기준 명시

3) 장학금 지급 횟수 기준 마련(안 제7조)

가) 장학금 지급 횟수를 '재학년수별 2회'로 한정

4)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신설(안 제8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본 조례안은

이장자녀 장학금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명확히 하고

장학생 자격을 구체화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횟수 한정 및 정지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형식 등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